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중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4. 2. 20. (화요일), 14:00 ~ 2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홍승재(위원장), 김문식, 남효대, 배용규, 소현수, 심경미, 이시영, 장호수, 조재모, 헤 도, 홍보식, 홍석주(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사적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2 |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
| 3 |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
| 4 |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야적장 부지조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 |
| 5 |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6개동 신축 |
| 6 |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 7 | 양주 온릉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타종교집회장) 신축 |
| 8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시설물 설치 |
| 9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막 설치 |
| 10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11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장 부지조성 및 신축 |
| 12 |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숭례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보고사항】

- | | |
|---|---|
| 1 | 2024년 살아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및 궁중문화축전 추진계획 보고 |
| 2 | 경복궁 사정전 전각 내부 집기 재현 - 상참의(常參儀) 재현을 위한 집기 제작 |
| 3 | 덕수궁 선원전지 임시개방 등에 관한 보고 |
| 4 | 창경궁 무장애공간 조성 공사 |
| 5 | 구리 동구릉 내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공사 |
| 6 | 남양주 순강원 가설 관리창고 설치 사업 |
| 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2-01

1. 사적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훈정동)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71-25

- 문화재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0.8㎡

- 건축면적 : 20.4㎡ → 18.06㎡(감2.34㎡)

- 연면적 : 20.4㎡ → 30.53㎡(증10.13㎡)

- 건폐율 : 50% → 44.26%(감5.74%)

- 용적율 : 50% → 74.82%(증24.82%)

- 최고높이 : 4.2m → 7.3m

-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은 오랜 기간 불법적인 증축과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건축물 정상화 및 내·외부 정비를 계획하였음

- 역사문화환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고려하여, 순라길구역 연구조사를 통해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색채, 재료 및 입면형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순라길의 우수한 경관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1.2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종묘는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서 강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소성을 반영하는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함
- 해당 대지는 종묘 담장을 마주한 선형 가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지침(건축선 유지, 합벽, 8m 높이 기준 등)에 의해 건축물이 계획되었음
- 가로 건축물의 입면이 이루는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공간의 장소성과 현재 가로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2.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1월, 제11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부결(사유: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1(공릉동)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9-53번지 일대
(문화재구역에서 9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건축현황	1차('23.11.21./부결)	금회(안)	비고
대지면적	2,350㎡	2,350㎡	좌동	
연면적	444.71㎡	1,244.51㎡	879.16㎡	
건축면적	395.26㎡	795.16㎡	829.71㎡	
최고높이	7.6m	10m	7.6m	
건축규모	2층*	2층	2층	

※ 2층 부분은 49㎡로 별도 층이라기 보다는 건물내부의 작은 전망대 형태이며 금번 신청 건축물은 해당사항 없음

(4) 신청인 의견

- 시설 및 콘텐츠 규모 확대를 통해 민원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람객의 콘텐츠 만족도,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23년 11월 개최된 제11차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본사업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에 적합한 전시관을 조성코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3.07.06./문화재위원 ○○○)

- 기 허가된 사안이나 예산 문제로 일부만 건축했고 이번에 증축을 신청한 건임
- 그러나 기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서 2층으로 계획하여 건물 높이를 높이고 면적을 넓혀서 계획안이 들어왔으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1구역 감안)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증축부 매스의 분절, 부대시설 확보, 조경계획 등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3.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12월, 제12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부결(사유: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휘경원(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6-3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9-11 외 1필지
(문화재구역에서 108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 사업내용 :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
 - 대지면적 : 588m²
 - 건축면적/연면적 : 66.00m²/66.00m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1개동,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 4.7m
- (4) 신청인 의견
 -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농사용 기계 및 농기구를 보관·사용하고자 하며, 불허된 사항에 대하여 외장재 계획 등 자료를 보완하여 재접수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12./문화재위원 ○○○)
 - 본 건은 창고용 건물 신축을 위해 제안한 건으로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형태, 재료, 색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문화재 주변의 기개발된 건축물의 풍경을 고려하여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4.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야적장 부지조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야적장 부지조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흥릉과 유릉 주변 야적장 부지조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흥릉과 유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1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47-5번지 외 2필지
(문화재구역과 연접)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야적장 부지조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
 - 대지면적 : 2,428㎡
 - 건축면적/연면적 : 36.00㎡/36.00㎡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 컨테이너 2개동(3.0m×6.0m) / 2.75m
- (4) 신청인 의견
 - 절성토 및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현 지반을 정리하여 야적장 허가를 받은 후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동일부지 '15년 사적분과 소위원회 부결 이력
 - 최고높이 5.5m(경사지붕) 지상 1층 모종재배용 온실 신축 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음

- 당시 현지조사 의견 : 본 대상지는 남양주 홍유릉의 능침 주요 권역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해당 문화재지정구역과 연접하여 외부 조망성 관점에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24.1.31./문화재위원 ○○○)

- 이 건물은 1구역에 직접 접해있는 부지로 문화유산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15년 부결 이력이 있고, 이후 변화된 여건이 없어 현지 여건은 동일함. 신청 내용은 건설자재용 야적장으로 현실적으로 진입로가 매우 취약하여 타당성이 약해 보임. 또한 문화유산 인접부로 내부 및 외부의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5.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6개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6개동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6개동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8년 3월 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재접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외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47-7번지 외 17
(문화재구역에서 329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4구역(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단독주택 6개동 신축

구분	기존 ('18.3.19./허가)	금회 안	비고
대지면적	2,568.0㎡	2,637.0㎡	등록전환 후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건축면적 / 연면적	237.24㎡ / 237.24㎡	388.62㎡ / 779.64㎡	건축면적 151.38㎡ 증가 연면적 542.4㎡ 증가
건축규모	지상1층(H:4m), 6개동,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H:9m), 6개동, 목구조+RC조	높이 5m 증가, 구조 변경
부지조성	옹벽(H=1.0~3.0m) L:254.7m 아스콘포장(T=5cm) : 284㎡ 절토량/성토량 : 638.8㎡/1,508㎡	좌동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4.2.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해당부지는 2018년 4m 높이 평지붕 단독주택 단지로 기허가받았으나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금회 9m 높이로 재심의 요청하였음
- 부지의 최대고도는 100m로서 1구역에 위치하며, 1구역의 심의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허가사항에 비해 완화하여 허가할 이유는 없어 보임
- 부지 주변의 필지(445-13외 1)의 경우 2023년 12월 9.3m 경사지붕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부지의 고도가 76.6m로 신청부지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므로 금회 신청의 근거로 삼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6.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3년 11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23년 12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부지 외부공간의 차폐계획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5번지
(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0㎡
 - 건축(연면적) : 164.7㎡(164.7㎡)
 - 건축규모/최고높이 : 1개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 4.5m
 - 부지조성 : 부순돌포장(T=20cm) 525㎡
 - 차폐림 설치, 피해방지웬스(H:1.5m) : 104m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3.11.16./문화재위원 ○○○, ○○○, ○○○)

- 온릉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의 건축 건으로 추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필지의 통합과 분할이 이뤄진 지역으로 향후 추가 건축 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역 전체의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조경식재 계획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7. 양주 온릉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타종교집회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타종교집회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타종교집회장)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56-46 일원
(문화재구역과 392.4m 이격)
 - 허용기준 4구역(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기타종교집회장) 신축
 - 대지면적 : 4,908㎡(A부지 : 369㎡, B부지 : 2,581㎡, C부지 : 1,958㎡)
 - 건축/연면적 : A부지(73.7㎡/ 73.7㎡), B부지(390.0㎡/390.0㎡),
C부지(164.7㎡/164.7㎡)
 - 건축규모/최고높이 : 5개동(A부지 1동, B부지 2동, C부지 2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 6.6m
 - 보강토식생용벽 : A부지(H=0.7~3.5m/L=9.5m), B부지(H=0~5.5m/L=364.9m),
C부지(H=0~4.0m/L=177.4m)
 - L형용벽 : A부지(H=0~2.8m/L=35m), B부지(H=0~2.7m/L=72.7m), C부지(H=0~4.0m/L=89.9m)
 - 콘크리트포장(T=20cm) : A부지(232㎡), B부지(1,432㎡), C부지(1,341㎡)
 - 아스콘포장(T=325mm) : B부지(606㎡)
 - 절토량/성토량 : 4,161.76㎡/ 4414.77㎡
 - 벌채 수량(재적) : 203본(96.09㎡)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4.2.1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온릉 진입부 남측의 호국로(왕복4차선)와 연접한 공릉천 건너편은 신흥유원지와 일영유원지, 주산 북측 능선 너머에는 장흥관광단지, 남측 얇은 능선 너머는 마을과 청향사가 위치함
- 신청 건은 온릉 북서측 문화재 경계에서 약 400m 떨어진 4구역 내 3개소에 부지를 조성 후, 제2종 근생시설 신축(5동/건물높이 6.6m)을 계획함
- 대상지는 온릉 주산 능선과 마을(1~15층) 너머 임야로 건물 신축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지조성을 위한 과도한 형질변경과 옹벽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구조형식보완 등) 및 차폐식재 등을 권장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옹벽의 구조·형식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8.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

- 대지면적 : 약1,680㎡

- 시설물 설치 : 수목보호판·보호틀(16개소), 웬스(278m), 전통담장(52m), 평의자(8개소), 수목보호벤치(2개소) 등

- 조명 설치 : 담장경관등(26개소), 수목경관등(21개소), 가로등(6개소)

- 바닥포장 : 인조화강석블록(886㎡), 화강석판석(51㎡)

- 식재 : 상록교목(15주), 낙엽교목(28주), 상록관목(794주), 낙엽관목(702주) 등

(4) 신청인 의견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용건릉 일대에 상징경관을 구축하고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화성시 경관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설계계획(안)을 도출하였음

라. 참고사항

(1) 검토의견

- 사업 전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 전반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9.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막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막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51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농막 설치
 - 대지면적 : 641m²
 - 건축(연)면적 : 18m²(18m²)
 - 최고높이 : 3.3m
 - 건축규모 : 지상 1층/1개동
- (4) 신청인 의견
 - 해당없음

라. 참고사항

- (1) 검토의견
 - 사업 전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0.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658 외 3필지
(문화재구역에서 110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2,999m²
 - 건축(연)면적 : 1,197.08m²(2,997.03m²)
 - 최고높이 : 11.50m(1동), 13.60m(2동)
 - L형 옹벽 : H=3.6m, L=33m/H=1.0~3.0m, L=46m
 - 절/성토량 : 1,648.08m³/1,240.96m³
 - 도로화면적 : 487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4.1.26./문화재위원 ○○○, ○○○)
 - 기건축된 건물의 최고 높이 11.90m를 넘는 건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 성토와 절토량이 많아 주변 지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 경사지붕의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건물의 외관이 경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1.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장 부지조성 및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장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장 부지조성 및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313 일원
(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 공장 부지조성 및 신축
 - 대지면적 : 4,923m²
 - 건축면적 : 1,935m²
 - 연면적 : 2,310m²
 - 최고높이 : 13m
 - 콘크리트용벽 : H=0.0~4.9m, L=295m
 - 질/성토량 : 9,042.83m³/384.84m³
 - 도로화면적 : 282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4.1.26./문화재위원 ○○○, ○○○)
 - 기건축된 건물의 최고 높이 11.90m를 넘는 건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 성토와 절토량이 많아 주변 지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함
 - 경사지붕의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건물의 외관이 경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12.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및 송례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서울 송례문(국보)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덕수궁) 사적 덕수궁, 보물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덕수궁 함녕전 통합고시
 - (송례문)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덕수궁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 포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 덕수궁 조경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승례문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승레문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서울시 ○○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중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보고 사항

【 보고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4-02-13

1. 2024년 살아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및 궁중문화축전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궁궐·조선왕릉의 품격을 높이고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사업계획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궁궐·조선왕릉의 품격을 높이고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사업명 : 2024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 일시/장소 : 2024년 1월~12월 /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등
- 추진경과 및 성과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 시행('09년~)
 - * "품격은 높게, 문턱은 낮게" 슬로건 아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양적 팽창
 - '09년 12개 사업(궁궐) → '24년 86개 사업(궁궐, 조선왕릉)
- 2024년 사업예산 : 239.67억원 (민간위탁사업비 222.67억원 / 자체사업비 17억원)
- 2024년 주요 추진 내용
 - 제10회 궁중문화축전 연2회 개최 등 파급력 강화(4.27~5.5 / 10.9~10.13.)
 - 궁중문화축전 10주년, 국가유산 체제 전환 등 주요 계기를 맞이하여 궁궐을 바탕으로 역사성과 장소성, 예술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운영
 - 축전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프로그램 구축 및 외국인 관람객 참여 강화로 전통문화 대표콘텐츠로 발돋움
 - 국민 여가 확대에 부응한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창덕궁 달빛기행, 밤의 석조전,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 ('23년 148일→ '23년 179일 이상)
 - 노년층 등 디지털약자 배려를 위한 전화예매 및 추첨제 확대(50%→60%이상)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
 - 제5회 조선왕릉문화제 개최 (10월중 / 조선왕릉 6개소 내외)
 - 조선왕릉 여행길 프로그램, 조선왕릉 제향체험 운영 등
- 수요자 맞춤형 관람서비스 제공으로 관람편의 제고
 -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외계층 행사 등 궁궐활용사업 사회적배려대상자 초청 확대
(‘23년) 3개 프로그램(38회, 1,054명) → (‘24년) 4개 프로그램(92회, 2,792명)
 -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 활용 프로그램 외국인 특별회차 운영(4개 프로그램, 73회)
- 활용사업 추진 시 궁능 활용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등 안전관리 강화

라. 참고사항

(1)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09년부터 각 유적관리소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훼손 방지 및 관람객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시행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2. 경복궁 사정전 전각 내부 집기 재현-상참의(常參儀)

재현을 위한 집기 제작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물 「경복궁 사정전」 전각의 내부 집기 재현 및 배치에 대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참의 재현 집기 제작이 완료되어 집기를 배치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21년 11월 ‘경복궁 사정전 전각 내부 집기 재현’을 하고자 궁능활용심의회에서 임금과 신하가 정무를 논하는 조선시대 상참의(常參儀)에 필요한 집기 재현 및 배치 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21.11.16.)받은바 있음
- 『춘관통고』, 각종 조선시대 의궤와 도설 등 고증자료를 통하여 정전과 편전의 주요 기능과 배치 집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고 국내 현존하는 궁궐 생활 유물을 참조하여 제작 집기 품목과 제작 방향을 정함. 2022년 심도있는 학술연구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22.4.26.)하고 조선시대사·건축사·궁궐회화사·공예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현 기물 제작 내용을 검증함
- 전통적 제작 기법 전승자인 전통장인에게 현시대에 제작 가능한 상참의 재현 기물을 제작 의뢰하여 용교의 등 14종 20점을 제작
- 따라서 제작된 재현 기물을 경복궁 사정전 내부에 배치하여 조선시대 편전의 모습에 걸맞은 왕의 공간을 재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 사정전(보물)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 (3) 보고내용
 - 위치 : 경복궁 사정전 내부
 - 사업내용 : 경복궁 사정전 전각 내부 상참의(常參儀) 집기 재현 및 배치
 - 재현품 수량: 왕의 기물 6종 6점, 상참의 기물 5종 9점, 의장물 3종 5점
총 14종 20점
 - 배치 시기: '24. 3월 이후

(4) 신청인 의견

- 최근의 궁중의례 및 집기 연구와 사료의 고증을 반영하여, 역사적 근거에 따라 조선시대 편전이 사용되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궐의 품격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사정전 내부에 재현되어 있는 어좌(2003년 제작) 등은 내부 활용 또는 필요 기관 대여 등으로 재활용 예정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3. 덕수궁 선원전지 임시개방 등에 관한 보고

가. 보고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선원전지 임시개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사유

- 덕수궁 선원전 권역 복원 착수 전까지, 문화유산 복원현장 일부 권역(약 8,000㎡)을 재정비하여 국민 휴식공간으로 임시개방코자 함
- 이에 선원전지 임시개방지 정비, ‘고종의 길’ 진·출입부 정비,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주변 정비 및 고품격 아트웍스·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휴게공간 제공, 문화향유기회 증진 및 수리현장 경관개선 등을 도모코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 (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보고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8
 - 사업내용 : 덕수궁 선원전지 잔디식재, ‘고종의 길’ 진·출입부 정비, 아트웍스 설치(덕수궁 흥덕전, 경복궁 영훈당 복원 현장) 등
- (4) 신청인 의견
 - 덕수궁 선원전지 권역 임시개방을 위해 협소하고 노후된 ‘고종의 길’ 진·출입부 정비, 선원전지 잔디식재, CCTV 설치, 덕수궁 및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아트웍스 설치 등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선원전지 개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코자 함

라. 참고사항

- (1) 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위원 ○○○, ○○○)
 - 게이트 및 안내소 디자인은 기존 웍스를 참고하고, 진입로는 단순화할 것
 - 아트웍스 디자인은 가급적 전통수종을 반영할 것 / 배수체계 개선 필요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4. 창경궁 무장애공간 조성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경궁 내 무장애공간 조성을 위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율곡로 궁궐담장길 개방에 따른 보편적 관람환경을 위한 무장애공간조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3) 보고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사업내용 : 무장애공간 조성
 - 경사로신설(50.8M)
 - 기존 경사로 변경(계단설치: 28.5M)
- (4) 창경궁관리소 의견
 - 율곡로 궁궐담장길 개방('22.7.)에 따라 안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경사로가 필요함
 - 기존 경사로는 경사가 심해 안전한 진입을 위하여 계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전문위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 BF인증 기준에 맞추어 수평참을 설치하고, 출입구 부근 대기 공간 조성
 - 대기 공간은 경사지게 성토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
 - 안전난간 및 벤치 설치, 경사로 구간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 기존 경사로는 계단 설치하되, 적절한 위치에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경사로 참 쉽터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여 미관상 눈에 덜 띄게 할 것

마. 의결사항

- 보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5. 동구릉 내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 공사 보고

가. 보고 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구리 동구릉」 내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 설치 공사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 사유

- 동구릉 내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 공사를 통하여 갈수기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 (사적 / 1970. 5. 26. 지정)
 -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 (3) 보고내용
 - 위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사적지 내)
 - 사업내용
 - 내충격 수도관 417m 연결 설치(현릉측 화장실~건원릉 전면부의 소방저수탱크)
 - 마사토 포장 복구 241㎡, 잡목 제거 등
- (4) 신청인 의견
 - 상수도 확장 공사를 통하여 상시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23.12.13./문화재위원 ○○○)

- 동구릉 소화시설의 수원은 계곡부에 형성된 수계의 지표수를 집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하나 갈수기에 물이 부족한 실정임
- 관로 매설 라인은 기존의 전기 및 통신선을 기준으로 연접하고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설치토록 함
- 터파기에 따른 매장유구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공사로 인하여 수목 생장 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6. 남양주 순강원 가설 관리창고 설치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순강원」의 가설 관리창고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남양주 순강원 내 가설 관리창고를 설치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순강원(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외

(3) 보고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2-2

- 사업내용 : 가설 관리창고 1동 설치

- 현황 : 2023년 12월 순강원 내 관람지원시설(사무실 등)은 신축하였으나 관리창고는 현재 부재함
- 위치 : 관람객화장실 배면 1동 설치
- 면적 : 18㎡(6m×3m)
- 높이 : 2.5m

(4) 신청인 의견

- 남양주 순강원 개방을 위한 각종 경상 관리장비 등을 보관하고 운용하기 위한 가설 관리창고가 필요하며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현대식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 설치할 예정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24.2.1./문화재위원 ○○○, ○○○)

-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시설물의 위치변동은 있었으나 금회사업(창고)도 관리공간(화장실 배면)에 배치하고 차폐조경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파주 삼릉」 주변 기존 공장부지 증설 및 증축(허가변경)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	<기존 공장부지 증설 및 증축(허가변경)>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외조리 124-88 (3구역/문화재구역에서 293m 이격) ○ 사업내용 - 기허가 건에서 건축물 위치 및 형태 변경 - 대지면적 : 2,836㎡ - 건축(연)면적 : 199.7㎡(199.7㎡)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일반철골조 - 최고높이 : 8m - 절토량/성토량 : 2,298㎡/1,586㎡ - 식생블럭(H=0~5m) : 99.5m - 보강토 옹벽(H=0~3m) : 99m	허가	'24.1.31.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접수 12명